

# 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규정

제정 : 2018. 02. 09.

개정 : 2022. 08. 05.

담당 : 전략기획실(02-950-5424)

----- 목 차 -----			
제1조(목적)	제2조(용어의 정의)	제3조(계획의 수립)	제4조(운영)
제5조(평가)	제6조(대학발전위원회)	제7조(자문위원회)	제8조(기타)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한국성서대학교(이하 '본교'라 한다.)의 건학이념과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하여 수립, 운영하는 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용어의 정의)** '발전계획'이라 함은 특성화 계획을 포함하여 건학 이념을 실현하고 대학의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비전, 목표, 추진 전략, 추진 체계, 세부 실행 계획, 예산 등을 말한다.

## 제2장 운영

**제3조(계획의 수립)** ① 대학 발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.

1. 대학 외부 환경 분석
2. 대학 내부 여건 분석
3. 대내·외 의견 수렴
4. 대학 발전 및 특성화 전략 수립
5. 연간 사업 계획 수립
6. 실행 계획 선정

③ 대학 발전계획의 입안은 전략기획실에서 하며 대학발전위원회와 교무위원회의 및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(개정 2022.08.05)

**제4조(운영)** ① 총장은 대학 발전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한다.

② 각 학과는 대학 발전계획에 따라 자체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.

**제5조(평가)** ① 대학 발전계획 운영은 자체평가규정에 따라 자체평가기획위원회에서 매년 평가한다.

② 대학 발전계획 운영의 평가 결과는 차기 대학 발전계획 수립시 환류하여 반영한다.

**제6조(대학발전위원회)** 중·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발전위원회에서 심의하며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따로 총장이 정한다.

**제7조(자문위원회)** ① 중·장기 발전계획에 대하여 자문받기 위하여 내·외부 자문위원회를 구성,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② 외부 자문위원회 위원은 교계, 정계, 관계, 재계, 교육계, 지역사회 인사 및 학부모 등에서 위촉하여 구성하며, 분야별로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**제8조(기타)**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대학 제 규정 및 각종 지침을 준용한다.

#### 부 칙
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2018년 02월 09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08월 05일부터 시행한다.